

日

本

예

산

# 제9차 漁港정비계획 마련 내년 2,386억엔투자 전 예산 신장률 앞서

〈본지 편집실〉

일본 수산청은 최근 각의를 거쳐 '94년도 예산 개선요구서를 대장성에 제출하였다.

요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개선요구 총액은 3,791억1,900만엔(전년도 대비 2.9% 증액)중 비공공 부분은 1,106억7,600만엔(전년도 대비 1.8%증액) 공공부분은 2,684억4,300만엔(3.4%증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신장률은 농수산청 전체의 신장률 1.8%(비공공부분 1.9% 공공부분 3.1%)를 상회하고 있고, 이어서 가혹한 환경하에 처해있는 수산업 진흥의 긴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중 어항관련예산은 2,386억300만엔(전년비 1.03%증액)이다.

요구액의 중점사항은 「연안의 신시대」구축을 기본으로 하여 일본 국민수요에 대응하기 시작한 해양과 어업의 형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9차 어항 정비 장기계획」 「제4차 연안어장 개발정비계획」 「연안어업활성화 구조개선계획」의 수산관계 3장기 계획('94년도~'99년도)의 책정을 최고 중점으로 하여, ① 21세기를 목표로 한 어업 생산기반 강화와 어촌지역 활성화, ② 일본 주변수역의 어업진흥과 연안 신시대의 토대, ③ 해외 어장확보와 어업협력, ④ 기술개발추진과 시험연구 강화, ⑤ 수산업, 어협의 경영대책추진과 어업 취로자 육성확보, ⑥ 수

산물의 수급안정·유통가공체제 정비를 주 목표로 하고 있다.

## 어항 관련 계획

제9차어항정비 장기계획('94~'99)의 책정

연안어업의 중요성 증대 등 최근의 수산업 동향 어항 이용변화를 포함하여, '94년도부터 제9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을 책정하여 어항의 정비를 추진한다.

① 연안지역의 고도이용-2백해리 체제의 정착에 의해, 일본주변 연안지역의 어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음에 따라 양식하여 구축되는 어업, 자원관리형 어업추진을 위하여 어항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피난거점의 정비를 추진한다.

② 소비자 수요에 합당한 수산물의 안정공급-일본국민의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유통가공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연안수역 어획물의 양륙 기능 충실을 강구한다.

③ 유연한 어항공간의 창출-최근의 일본주민의 해양성 레크레이션의 수요가 상승하

는 상태를 배경으로 하여 일반국민에 의한 어항이용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국민이 바다와 어울리는 장으로서 어항어촌의 종합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어항에 대한 어선과 유어선, 프레저·보트의 이용조정을 추진 핏서리너의 정비를 추진한다.



④ 쾌적하고 활력있는 어항어촌의 형성-어촌주민의 생활과 교통의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항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고령자와 여성 등을 배려한 시설의 정비, 쾌적한 취업환경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 자연되고 있는 어촌생활환경의 개선을 이룩하기 위한 어업집락 배수시설, 어업집락도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⑤ 아름다운 해변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상승과 연안어장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어항주변의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주변 환경과 경관을 배려한 시설정비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3조4,000억엔으로 내역은 별표와 같다.

## 신규 중점 사항

(1) 어항공간의 종합적 정비

① 유연한 어항어촌 정비사업 마리노베이션구상 상태에서 계속 실시

② 어항이용조정 사업의 확충

③ 어항교류 광장 정비사업의 창설

(2) 광역 어업집락 정비사업의 창설

(3) 어업 계통의 자원 리사이클구상의 창설

(4) 어항해안 사업의 확충

① 아름다운 어항, 어촌해안 정비대책

② 자연환경 재생사업의 창설

또한 개산요구액에서 '94년 말 장기계획의 진로는 제9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에 대하여 약10%, 제5차 해안사업 5개년 계획에 대하여는 약80%가 기대되고 있다.

**어항 교류공간의 종합적 정비**

최근, 일본국민의 여가 시간 증가 자연지향 건강지향과 함께 맞물려 일본국민의 해양성 레크레이션의 관심이 갑자기 상승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업과 해양성 레크레이션으로의 어장, 어항을 둘러싸고 있는 이용질서를 확립해가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되어있다.

이 때문에 일본국민이 해양에 친숙해지는 지점으로서 어항의 역할을 배려하고 어업과 해양성 레크레이션의 조화가 갖든 발전에 투자하는 어항의 정비를 추진한다.

유연한 어항어촌 정비사업의 추진 - 어항과 어촌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특성을 살린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개요**

(금액단위 : 억엔)

사	항	사 업 량
	연안지역의 고도이용	12,000
	소비자 수요에 부합한 수산물의 안정공급	4,500
	유연한 어항공간의 창출	4,000
	쾌적하고 활력있는 어항어촌의 형성	11,900
	아름다운 해변환경의 보존과 창조	1,600
합	계	34,000

친숙하고 쉽고 휴식하기 편리한 해양, 어촌 주민 및 도시 주민이 어울리는 상태의 장을 구축하고 추진한다.

이 때문에 '93년도 까지 유연한 어항어촌 정비계획을 책정한 지구에 대하여 그 계획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는 이외, 새로운 신 마리노베이션 거점 교류 종합정비 계획(유연한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지구에 대하여 정비에 착수한다.

② 어항이용 조정사업 확충 - 어선과 유어선 플래저보트 등과의 어항이용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유어선 플래저보트 등 피셔리너의 정비를 실시한다. 그 사이에 어항어촌 지구가 지형적 조건 등에 의해 주차장의 확보가 곤란하고 피셔리너 정비를 전개하여 가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차장에 대

하여 보조의 확대를 요구한다.

③ 어항 교류광장 정비사업의 창설 - 수산물의 조우를 통하여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도모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광장의 정비를 중심으로 하여 친수시설 등을 갖춘 양호한 워터·프론트의 정비를 실시한다.

**어업계통 자위 리사이클 종합추진사업(에코·토피아)구상**

최근 일본 주변 경제발전에 따라 생산 및 소비의 확대 일본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어업형태의 진보에 의해, 그 상당부분이 이용되지 않고 처리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폐어선, 폐어망 등과 (수력에너지를 유효자원으로 한 어업계통 자원의 리사이클 등을 도모하

고 환경에 우수한 어항어촌 지역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한 거점어항에 대하여 어업계통 자원등 재이용시설을(정비) 어항어촌 지역의 자원 재이용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어촌어항에 대한 리싸이클 방법 및 로컬, 에너지 등의 이용방법에 종합적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한 모델지구에 있어 어업계통 자원 재이용 시설 및 로컬·에너지 이용 시설을 정비한다.

광장어업 집락 환경정비사업  
현재 어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어항의 배후 어업 집락을 대상으로 수산음

잡(水産飲雜) 용수시설 어업 집락 배수시설등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항 배후집락 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의 어업집락과 어업, 생활경제 등으로 연결된 어업 집락도 포함한 지역에 있어 수산음잡 용수 및 집락배수를 일제히 정비하였지만 지역에 있어서는 시설 정비를 하는 상태에서도 경제면으로도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어항배후 집락도 그 근린집락을 포함한 복수의 집락을 광역적으로 정비하는 광역 환경 정비사업을 창설한다.

어항 배후집락의 인근집락에 있어서 다음의 시설정비를

실시한다.

① 광역 수산음잡 용수시설 정비-복수의 어업집락에 대하여 1개소의 수산음잡 용수 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처리장 관로(管路)(어업 배후 집락과 각 근린의 집락을 관로로 잇는 것을 포함한다)등 설비일체를 정비한다.

② 광역 어업집락 배수시설 정비-복수의 어업집락으로부터 오수 등을 관로로 이어 1개소의 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처리장 관로(어항배후집락과 인근의 각 집락을 잇는 관로도 포함한다)등의 시설일체를 정비한다. ㉠

### 사 업 별 내 역

(금액단위 : 억엔)

사 업 명	8 차 계 획		9 차 계 획		9차/8차 대 비
	('86년도~'93년도)		('94년~'98년도)		
	어 항 수	사 업 비	어 항 수	사 업 비	
개축사업	490	13,100	500	19,000	1.45
개수사업	대략 920	5,500	대략 1,000	8,000	1.45
국부개량		1,700		2,000	1.18
어항환경				4,000	-
소 계		20,300		33,000	1.63
지방단독		400		1,000	2.50
조 정 비		3,400			-
합 계		24,100		34,000	1.41

‘94年度漁港關係事業概算要求總括表

(金額單位：百萬元)

事項	‘93年度當初成立				‘94年度概算要求				
	通常		NTT		通常		NTT		
	國費	國費	國費	國費	前年比	國費	前年比	計	
I. 漁港施設算	184,373.00	29,579.00	213,952.00	194,213.00	1.053	26,543.00	0.897	220,756.00	1.032
1. 漁港施設事業費	180,099.00	29,579.00	209,678.00	189,597.00	1.053	26,543.00	0.897	216,140.00	1.031
修築事業	99,300.00	24,161.00	123,461.00	104,661.00	1.054	22,422.00	0.928	127,083.00	1.029
改良事業	54,506.00	2,469.00	56,975.00	53,197.00	0.976	2,639.00	1.069	55,836.00	0.980
國富改良事業	11,116.00	455.00	11,571.00	11,203.00	1.008	368.00	0.809	11,571.00	1.000
(3事業計)	164,922.00	27,085.00	192,007.00	169,061.00	1.025	25,429.00	0.939	194,490.00	1.013
漁港公害防止対策事業	24.00	0.00	24.00	40.00	1.667	0.00	-	40.00	1.667
漁業集落環境整備事業	5,884.00	695.72	6,579.72	7,742.00	1.316	484.00	0.696	8,226.00	1.250
漁港環境整備事業	1,799.00	618.00	2,417.00	2,634.00	1.464	630.00	1.019	3,264.00	1.350
調査施設調査補助	58.00	0.00	58.00	60.00	1.034	0.00	-	60.00	1.034
漁港施設調査費	133.00	0.00	133.00	138.00	1.038	0.00	-	138.00	1.038
作業船整備費	8.00	0.00	8.00	13.00	1.625	0.00	-	13.00	1.625
補助率差額	7,271.00	1,180.28	8,451.28	9,909.00	1.363	0.00	0.000	9,909.00	1.172
2. 漁港関連道整備事業費	4,274.00	0.00	4,274.00	4,616.00	1.080	0.00	-	4,616.00	1.080
漁港関連道整備事業費	4,037.00	0.00	4,037.00	4,379.00	1.085	0.00	-	4,379.00	1.085
補助率差額	237.00	0.00	237.00	237.00	1.000	0.00	-	237.00	1.000
II. 海岸豫算	14,027.00	2,168.00	16,195.00	14,776.00	1.053	1,963.00	0.905	16,739.00	1.034
海岸保全施設整備事業	10,535.60	860.60	11,396.20	11,014.20	1.045	517.00	0.601	11,531.20	1.012
海岸環境整備事業	2,566.60	1,235.40	3,802.00	2,600.00	1.013	1,446.00	1.470	4,046.00	1.064
公有地造成護岸等整備事業	173.00	53.00	226.00	245.00	1.416	0.00	-	245.00	1.084
漁港海岸調査費	28.80	0.00	28.80	28.80	1.000	0.00	-	28.80	1.000
補助率差額	723.00	19.00	742.00	888.00	1.228	0.00	0.000	888.00	1.197
III. 災害復舊豫算	771.00	0.00	771.00	1,083.00	1.405	0.00	-	1,083.00	1.405
IV. 漁港事業指導監督費	18.97	6.93	25.90	18.98	1.001	6.93	1.000	25.91	1.000
計	199,189.97	31,753.93	230,943.90	210,090.98	1.055	28,512.93	0.898	238,603.91	1.033